

의안번호	2215621
의 퇴 인	신동욱의원
회 답 일	2026.2.25.
추계번호	25D7125

지방의회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(전문위원)	-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이하 “전문위원”이라 한다)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 -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※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	의무규정
2	안 제6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)	-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※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4조(전문위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)	

2. 상세 사유

□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 채용(안 제64조)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지닌 위원만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전문지식을 지닌 위원과 함께 필요한 공무원도 두도록 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각 지방의회별 위원회 공무원의 수, 직급별 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(안 제66조)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 정원보다 증가된 정수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.
-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지방의회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, 직급별 인원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